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37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김재원 · 황운하 · 장종태
김한규 · 백선희 · 박정현
강준현 · 김교홍 · 박은정
이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제109조제1항제6호 중 “제106조제7항”을 “제106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 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u>
⑦ (생 략)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u>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u> 7. ~ 9. (생 략) ② (생 략)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06조제8항</u> ----- ----- -----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